

[특집]

교회법 연구와 관련한 교황청의 지침에 대한 UST(산토토마스대학) 교회법대학원의 응답*



Fr. Isaias Antonio D. Tiongco, O.P., J.C.D.

[Dean, Faculty of Canon Law, Pontifical and Royal University of Santo Tomas]

임 지 영 옮김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프리랜서 통번역사]

- I. UST(산토토마스대학) 교회법대학원의 역사
- II. 교회법대학원의 조직구성과 교원, 학사일정 및 인적·물적 자원
 1. 조직구성과 교원
 2. 학사과정
 3. 교회법대학원의 입학과 학생들 통계
 4. 행정직원, 강의 자원 및 재원
 5. 필리핀 천주교 5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법대학원의 사명

I. UST(산토토마스대학) 교회법대학원의 역사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국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측에 오늘 컨퍼런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제게 주어진 임무는 교회 대학교, 특히 교회법대학원의 개혁에 관한 교황청의 지시말씀에 대한 우리 교회법대학원의 응답이 어떠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발표는 <프란치스코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중 교회법대학원과 관련한 규정>이었으나 베르살디 추기경님께서

* 이 글은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학술심포지엄(2019.11.9.)에서 발표한 논문 “The UST Faculty of Canon Law’s Response to the Instructions of the Holy See for the Study of Canon Law”을 번역한 것입니다.

동 교황령에 도입된 개정사항과 이의 교회법 분야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신다는 권고를 듣고 제 발표 주제를 동 교황령에서 담고 있는 개혁 내용에 대해 우리 UST, 특히 우리 교회법대학원이 최근 몇 년 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관련한 측면으로 한정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먼저 도입부로서 산토토마스대학과 교회법대학원 설립 역사에 대해 짚은 후 둘째, 우리 교회법대학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제 발표의 주요 핵심이 될 것이며 이는 다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조직도와 교원 구성, 2) 학사 일정, 3) 입학과 학생 구성, 4) 행정직과 자원, 재정적 여력과 재정 조달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필리핀 내 그리스도교 50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법대학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제 주요 목표는 교황령 「진리의 기쁨」의 각 조항들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법대학원이 동 교황령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UST와 교회법대학원의 설립 초기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ST 교회법대학원은 이미 거의 300년에 가까운 역사(정확히는 285년)를 자랑합니다. UST 산하의 기관들 중 지극히 초기에 설립된 대학 중 하나입니다. UST는 1611년 4월 28일,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의 Miguel de Benavides 마닐라 제3추기경님에 의해 신학대학교(College Seminary)로 설립되었습니다. 1619년 7월 29일, 신학과 철학 학위 수여를 허가 받았으며 In Supereminenti라는 문서를 통해 1645년 11월 20일, 교황청이 인정하는 종합대학교(University)가 되었습니다. Dudum Emanarunt라는 문서에서 1734년 9월 2일, 교회법 학위 수여를 허가 하였습니다. 1902년 9월 17일 발표된 교황 레오 13세의 교황령 Quae Mari Sinico을 통해 우리 대학교가 교황청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이후 1947년 4월 10일 교황 비오 12세께서 필리핀 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라는 명칭을 허가해주셨습니다.

UST의 원래 캠퍼스는 마닐라 성곽도시(Intramuros로 불림) 내에 있었고 이후 1927년에 마닐라 삼팔록(Sampaloc)에 캠퍼스를 증축하였습니다. 최초의 캠퍼스는 2차 대전 중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학사 일정만은 삼팔록의 제2캠퍼스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삼팔록의 캠퍼스가 현재의 UST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UST는 필리핀의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곧 두 개의 캠퍼스를 추가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 중 하나는 민다나오 섬(필리핀 내 세계의 주요 섬 중 가장 남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우리 교회법대학원은 그 설립 취지에서 복음의 빛 안에서 교회법을 연구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사제 및 평신도 양성을 통해 그들이 교직 혹은 교회법원에서의 사목으로써 교회 내 고위직에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법학 분야에서의 지식의 생성, 발전, 전파를 통해 교회와 사회 전반에 대한 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법대학원은 그 설립취지에 맞게 특히 필리핀 교회와 특히 아시아 교회 내에서의 입지를 인정받고자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양질의 졸업생들을 배출해 왔고 이들은 현재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교회법원에서 사법대리로, 판사로, 기타 일꾼으로 봉직 중입니다. 사실 필리핀 내 유일한 교회법 전문법률가 집단인 필리핀 교회법학회(CLSP)의 회원들 중 상당수가 우리 교회법대학원 졸업생들입니다. 우리 대학원의 교수님들은 또한 동 법학회의 주요직에 계시는 바, 연례 회의마다 우리 UST 교회법대학원의 긍정적인 기여와 참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필리핀 내의 다양한 대교구와 교

교회법대학원장은 다른 두 개의 교회대학원장과 마찬가지로 교회법대학원 소속 교수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적어도 부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회법대학원의 종신 교수일 것을 요합니다. UST의 대학평의회 회원들의 찬성 투표¹⁾를 거쳐 총장에 의해 임명됩니다. 그리고 교황청 교육성에 의한 확인을 받습니다.²⁾

교회법대학원장은 대학원 운영에 있어서 대학원회의(Faculty Council)의 보조를 받는데, 동 회의는 모든 소속 교수들로 구성됩니다. 교원의 경우 UST의 교회대학원으로부터 적어도 강사(Instructor) 이상의 직에 임명을 받는 순간 교회대학원 소속임이 인정됩니다.³⁾ 하지만 관행상 도미니크 수사님들, 특히 필리핀의 Dominican Province와 Holy Rosary Province에 속하는 수사님들이 ‘소속’ 교수, 더 나아가 평의회의 일원으로서 임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의 평의회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육과정 수정, 교수의 임면, 학위 획득 시험을 위한 학생 입학, 합병 기타 다른 연계와 관련한 탄원서의 평가, 학생 징계문제, 특히 학위 박탈과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⁴⁾ 일정한 경우 학생 대표가 평의회 참석을 요구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주로 학사 일정 중 생기는 우려사항과 활동 현황에 대한 발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⁵⁾

소속 교수는 산토토마스대학이 예정하고 있는 직급에 따라 분류됩니다.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뒤로 갈수록 높은 직급)가 그것입니다.⁶⁾ 교회대학원 정관에 따르면 종신직 임명은 조교수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⁷⁾ 우리 정관에서는 또한 강사에서 조교수로의 승진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직급으로든 승진하는 경우 가톨릭

1)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7.6조.

2)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7.7과 「진리의 기쁨」 제18조 및 적용규범 제12조.

3)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7.1조.

4)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8.2조.

5)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8.1조.

6) UST 학칙 제39.1조 및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11.1조.

7)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11.2조.

교육성으로부터 nihil obstat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⁸⁾ 강사의 직급에 머물러 있는 도미니크 수도회 교수의 경우 강사로서의 의무 교수 연한을 채우거나 교회법 박사학위를 획득할 것이 요구됩니다.

소속 교원 이외에도 ‘초빙교수’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초빙교수는 필수적인 학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법대학원의 수업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원의 엄격한 관행, 즉 필리핀 내의 Dominican Province와 Holy Rosary Province 출신만을 소속 교수로 임명하는 관행을 고려해 보면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이 아닌 교수가 바로 초빙교수로 임명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초빙교수님들의 다수가 매 학사연한마다 계속해서 수업을 배정받고 있다는 것과 학생들의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 연구 지도 역할 역시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원의 초빙교수님들은 필수적으로 교회법 박사학위 보유자이고 지역 관구로부터 우리 교회법대학원에서의 교수활동에 대하여 명백한 허가를 받았으며, 동시에 다른 교회대학원에서의 어떤 상시직 교수사역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 교수에게만 종신직을 허용하고 있는 본 대학원의 정책상 이들에게 종신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재 일곱분의 초빙교수가 계신데 UST가 자체적으로 세 개의 교회대학원에 부과하고 있는 해당 제한만 아니라면 이미 종신직 임명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신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우리 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서 기꺼이 수업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는, 교회법 박사학위를 보유하신 다른 교회법학자도 있으나 현재 대학원의 교원들이 이미 모든 과정을 맡고 계신 상태라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상기의 자료를 참조해 본다면 우리 교회법대학원은 학생들의 학

8)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12.2조와 12.4조 및 「진리의 기쁨」 제27조 2항과 적용규범 제21조 1항.

습 공동체의 건전성과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원들을 임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황령 「진리의 기쁨」 section II⁹⁾와 적용규범의 말씀을 따라 이사장과 부이사장, 총장, 그리고 저를 비롯한 대학의 다른 기관들은 UST 교회법대학원이 항상 그 설립목적과 임무를 염두에 두고 가톨릭교육성의 규정들을 잘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교황령의 section III에서 규정¹⁰⁾하고 있는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용규범 제22조, 18조 2항에서 언급된 ‘종신직 교수 필요 숫자’를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령 제25조, 26조, 27조 2항에 언급된 종신직 교수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¹¹⁾ 위에서 언급했듯이, 필리핀의 도미니크 수도회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교회법대학원에서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교회법 석사 및 박사 학위를 획득하여 나중에 교회법대학원의 종신교수직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도미니크 수도회 내에서 교회법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과정 중에 있는 학생 세 명을 이미 확보 중이며 막 교회법 석사과정을 마친 젊은 사제와(Fr. Arden Xerxes Dacuma, O.P.) 박사과정을 곧 수료할 예정인 다른 사제 한 분(Fr. Romualdo Cabanatan, Jr., O.P.)이 계십니다.

2. 학사과정

a. 가톨릭교육성의 2002 교령과 관련한 최근의 정황

학사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학원에서 개혁을 단행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2002년 9월 2일 가톨릭교육성이 교회법대학과 교회법

9) 「진리의 기쁨」 제11~21조와 적용규범 제9~17조. 또한 UST 학칙 제6~9조.

10) 「진리의 기쁨」 제22~30조 및 적용규범 제18~25조.

11) UST 교회법대학원 학칙 제10조 및 11.2조.

학과의 학사 순서를 수정하는 교령을 발표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i. 3년 과정 JCL 학위

먼저 우리 교회법대학원은 학사과정을 개혁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사실, 2002~2003년에 이미 우리의 석사학위 과정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¹²⁾ 물론 당시에는 3년차 과정에 대해서 제한적인 학점 배분만을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석사학위 과정 3년 동안 학점 이수 요건을 동등하게 갖추으로써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해당 개혁을 필두로 하여 우리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은 이제 6학기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학기 당 14에서 18UST 학점(혹은 28에서 36ECTS)을 이수하여 일년 동안 대략 총 60ECTS를 이수하도록 되었습니다.

ii. 제1과정

둘째, 교회법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철학-신학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과정인 제1과정¹³⁾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1과정을 교회법 공부를 위한 ‘예비과정’으로도 부릅니다. 일반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도 해당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법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8년 이후 동 과정을 거친 학생이 적어도 두 명이나 됩니다. 본 과정의 실질적 실행은 철학 및 신학대학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 우리가 이 제1과정에서 학생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비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이 비록 철학대학원 및 신학대학원의 과정에도 등록을 하고 있지만 교회법 대학원장으로서 이들의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는 점입니다. 제1과정 역시 2년 과정이며 학점은 학기당 18에서 20UST 학점입니다. 2년 동안 제1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72UST 학점 혹은 적어도 111ECTS입니다.¹⁴⁾

12) 교회대학과 교회법학부의 연구과정 개편에 대한 가톨릭교육성의 교령 1b.

13) 같은 교령 1a.

UST 교회법대학원			
제 1과정 (교회법 예비과정)			
과목명		학점수	
		CREDITS	
		UST	ECTS
ELEMENTS OF PHILOSOPHY 철학 관련 과목			
PHILO 101	INTRODUCTION TO PHILOSOPHY & ST. THOMAS	3	5
PHILO 102	LOGIC	3	5
PHILO 107	PHILOSOPHY OF NATURE (COSMOLOGY)	3	5
PHILO 108	PHILOSOPHICAL ANTHROPOLOGY	3	5
PHILO 112	MORAL PHILOSOPHY (ETHICS)	3	5
PHILO 201	METAPHYSICS I	3	5
ELEMENTS OF THEOLOGY 신학 관련 과목			
FDTh 1	INTRODUCTION TO SACRED THEOLOGY	2	3
FDTh 3	GOD, ONE AND TRINE	2	3
MStTh 1	FUNDAMENTAL MORAL THEOLOGY	2	3
Ss 1	INTRODUCTION TO SACRED SCRIPTURES	2	3
FDTh 2	DIVINE REVELATION	2	3
MStTh 9	BIOETHICS	2	3
MStTh 2	GRACE	2	3
FDTh 7	ECCLÉSIOLOGY	2	3
FDTh 5	CHRISTOLOGY	2	3
FDTh 10	SACRAMENTS IN GENERAL AND SACRAMENTS OF BAPTISM AND CONFIRMATION	2	3
FDTh 11	SACRAMENTS OF RECONCILIATION AND ANOINTING	2	3
FDTh 12	SACRAMENTS OF THE HOLY EUCHARIST	2	3
FDTh 13	SACRAMENTS OF THE HOLY ORDERS	2	3
MStTh 6	SOCIAL DOCTRINES OF THE CHURCH	2	3
PTHLC 1	LITURGY I: GENERAL INTRODUCTION	2	3
CHPA 5	SECOND TO THIRD CENTURY PATROLOGY	2	3
FDTh 6	PNEUMATOLOGY	2	3
FDTh 8	MARILOGY	2	3
FDTh 9	ESCHATOLOGY	2	3
MStTh 5	JUSTICE	2	3
FDTh 14	INTERFAITH DIALOGUE	2	3
CHPA 1	ANCIENT CHURCH HISTORY	2	3
FDTh 4	CREATION & CHRISTIAN ANTHROPOLOGY	2	3
FUNDAMENTAL CANONICAL STRUCTURE 교회법 기본 구조			
PTHLC 9	CANON LAW I: INTRODUCTION TO CANON LAW	2	3
PTHLC 10	CANON LAW II: SACRAMENTS	2	3
LATIN 라틴어			
LATIN 1	GRAMMAR AND SYNTAX I	2	3
LATIN 2	GRAMMAR AND SYNTAX II	2	3
		72	111
ALTERNATIVE THEOLOGY COURSES (OPTIONAL) 대체 신학 과정			
CHPA 2	MEDIEVAL CHURCH HISTORY	2	3
MStTh 4	MORAL VIRTUES	2	3
MStTh 3	THEOLOGICAL VIRTUES	2	3
MStTh 7	LOVE, MARRIAGE AND FAMILY	2	3
Duration of the Program: 2 Academic Years 예비과정 기간: 2년			
Recommended Work Load per Academic Term: 18 - 20 units 학기 당 권고 학점 수: 18-20학점			

[표 2] 제1과정의 이수과목

iii. 라틴어 과정 강화

그리고 셋째로 라틴어 과정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교령의 내용에 따라 매 학기마다 라틴어 수업이 개설되도록 하였고 특히 제2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는 매 학기마다 반드시 라틴어 수업을 꼭

14) 교령 II.1과 「진리의 기쁨」 제78.a조 및 적용규범 제61조.

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총 여섯 개의 라틴어 수업(12UST 학점 혹은 24ECTS)을,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라틴어 수업을 추가적으로 들어야 (4UST 학점 혹은 8ECTS)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학사연도 2009~2010년 동안 UST 교회대학원(교회법대학원 포함) 내에서의 라틴어 수업은 또한 주로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위원회가 생기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우리 학생들의 라틴어 실력의 진전 상황을 감독하고 교회법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라틴어의 독해와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¹⁵⁾

b. 교회법대학원의 제2 및 제3과정

가톨릭교육성의 2002년 교령은 교황령 「진리의 기쁨」에 의해 구체화된 바, 우리 교회법대학원의 제2 및 제3과정의 학사계획을 구성함에 있어 1차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습니다.

i. 제2과정

우리 교회법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은 다행히도 교황령 「진리의 기쁨」과 그 적용규범과 일치합니다. 동 교황령 제78.b조와 적용규범 제61.2조에 따라 UST 교회법대학원의 제2과정에서는 총 6학기동안(3 학사연도) 지속되는 석사과정 동안 1983년 교회법의 내용 전체를 규범, 법철학, 이론, 실무의 몇 가지 관점을 통해 다룹니다. 또 철학이나 신학, 로마법, 교회법의 연원, 국가 관계론, 절차법 등 관련 학문 수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교회의 교회법에 대한 입문 수업은 물론 6개의 라틴어 수업(매 학기마다 하나의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세미나 과정도 있어서 교회법의 현안을 반영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15) 「진리의 기쁨」 제78조와 적용규범 제62조 3항.

부분이 있다면 가족법과 그 연구에 관한 실무 과정(논문 작성 과정)입니다. 3학점짜리(6ECTS) 과정 하나가 실습(Practicum)에 추가되어 학생들이 판결문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실제로 혼인법정의 심리를 직접 견학하는 3학점짜리(6ECTS) 실습 수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 견학 수업 이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실습 수업의 통과 조건입니다.

또한 우리 수업과정의 연구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석사과정에서부터 연구와 지필 과제물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물론 박사과정에서는 이것이 더욱 강화되지만 석사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부터 지향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석사과정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수업 중에 구두로 발표하거나 학기 말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연구는 더욱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바, 최근 석사 논문에 대한 검토에 있어 더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종 성적의 상당 부분(45%)을 차지하는 것이 석사 논문인데 논문 자체와 구두 방어(defense)가 모두 채점의 대상이 됩니다. 제출된 논문은 세 명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연구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구두 방어는 세 명의 평가패널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의 공부기간 동안 이수한 모든 과정의 가중평균학점이 최종 성적의 3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종합 지필고사를 통해 집계됩니다. 석사과정의 종합 시험은 지필과 구술의 형태가 있습니다. 종합 지필고사는 석사과정 논문의 구두 방어가 있기 1주일 전쯤 치러지며 종합 구술시험은 논문 방어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논문을 방어하는 동안 심사위원은 교회법에 대한 학생의 전체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교회법에 관한 질문을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 구술시험과 지필고사는 모두 교회법대

학원에서 출간한 ‘교회법 100대 논문’에서 제출됩니다.

우리 대학원이 석사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연구 질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 교회법 석사학위 취득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구 기간의 연장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3년의 재학 기간 이후에 석사학위 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논문 작성에만 종일 집중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 5년을 더 허락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의 양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제2과정을 이수하는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학위를 이수함에 있어서 논문 방어 이후의 필수 제출 요구사항까지 포함, 총 4년이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 방어 이후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구사항이란 바로 석사학위 논문의 초록을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의 저널지인 *Mens Juridica*에 본인의 논문이 실릴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동 저널은 우리 대학원 졸업생들의 잘 된 연구 결과를 신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의 지도교수 한 분, 그리고 대학원장실의 감독하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널입니다.

ii. 제3과정

제3과정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대학원장실이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수업과정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미나 과정(석사과정 중에 제공되는 것 중 연구에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과정도 포함) 및 적어도 라틴어 V와 VI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상응하는 두 과목 이상의 라틴어를 이수해야 합니다. 박사과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논문작성입니다. 2011년 이래 저희 대학원 정책상 박사학위 후보자의 경우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 패널(교회법 박사학위 보유자 다섯 명으로 구성)의 구두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동 패널이 연구제안서에 대해 명시적인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학생이 박사학위 후보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박사과정 논문 완성을 도와줄 지도교수가 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미 독립된 연구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석사과정 프로그램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는 연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화된 것입니다.

박사과정의 경우 5년 안에 학위를 따야 합니다. 이러한 재학 연한이 경과하는 경우 대학원회의는 대개 학생 연구의 진척 상황을 검토하여 코스워크를 다시 듣게 할 지 아예 그만두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장실에 의해 요구되는 수업과 라틴어 필수과정 외에도 제3과정은 논문작성, 방어, 그리고 심사통과¹⁶⁾는 물론 논문 공개강의(lectio coram)와 논문 초록의 출간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원장과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논문 출간의 경우 전문 혹은 주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¹⁷⁾ 본 대학원의 연구에 대한 강조에 따라 박사과정 연구의 검토와 평가 과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작성된 논문과 최종 방어에 매겨지는 점수가 최종 성적의 계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¹⁸⁾ 또한 논문 공개강의는 ‘교회법 박사’로서 학생이 처음으로 하는 강의 역할을 하며 논문 방어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같은 패널이 결정하는 주제에 대해 진행됩니다. 이 공개강의는 박사과정 학위 시험의 일부이며 따라서 성적이 부여됩니다.¹⁹⁾ 논문 심사를 담당했던 패널 위원이 역시 공개강의에 참석하게 되며 강의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패널 위원들은 강의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법 박사 지원자들이 보다 더 교회법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 「진리의 기쁨」 제78조 c와 적용규범 제61.3조.

17) 「진리의 기쁨」 제49조 2항과 적용규범 제36.1조.

18) 최종 성적의 총 80%가 논문점수가 된다. 작성된 논문이 40%이며 구두 방어가 40%.

19) 논문 공개강의가 최종 성적의 20%를 차지한다.

3. 교회법대학원의 입학과 학생들 통계

우리 대학원 학칙(제9조)에 기술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직 및 예비 사제들, 수도자들 및 평신도 그 누구에게라도 입학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이 요구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일반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학위 조건을 갖출 것,²⁰⁾ 2) 신학생, 사제 또는 수도자의 경우 각자가 속한 교구장 혹은 수도원장의 서면 허가서, 3) 평신도의 경우 그가 속한 교구장의 증명서입니다.²¹⁾

우리 학생들의 다수는 신학생이거나 혹은 사제님들입니다. 또 수녀님들, 평신도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평신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입학생 수는 112명, 학기 당 평균 학생 수는 59명이었습니다. 이 중 사제는 74명, 신학생 24명, 수녀 8명, 그리고 평신도는 6명이었습니다(이 중 네 분이 제2과정을, 다른 두 분이 제1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41개의 필리핀 내 대교구 및 교구, 12개의 외국 (특히 아시아) 교구 출신이었고 28개의 수도회와 기타 단체 출신으로 집계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연간 평균 12명의 신입생이 입학했고 한편 연간 평균 6명이 졸업하여 5년 동안 30명이 졸업하였습니다. 학사연도 2014-2015년 이래 배출된 30명의 졸업생 중 9명(30%)은 외국인 전형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철학이나 신학 분야 공부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은 이미 법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19.1조 및 「진리의 기쁨」 제32조 1항과 적용규범 제26조 1.2항.

21)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19.2조 및 「진리의 기쁨」 제31조와 적용규범 제26조 1.1항.

2년(4학기) 동안의 제1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²²⁾

본 대학원 입학은 입학위원회가 담당하며 그 구체적 역할은 UST 교회대학원 일반 학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²³⁾ 동 위원회는 제2과정에 지원한 학생들 평가도 담당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다른 교회법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대학원에서 들었던 과목에 대해서 동 위원회가 특별히 면제를 권고할 수도 있지만 학칙과 학업지침(Plan of Studies)에서 명시된 나머지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²⁴⁾

우리 대학원은 학생의 학적 유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 대학원의 주요 과목에서 F학점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학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며 본 대학원에의 추가 등록 자격 역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²⁵⁾ 제2과정 중 세미나와 외국어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주요 과목으로 간주됩니다.

4. 행정직원, 강의 자원 및 재원

교회법대학원의 일상적인 학사에 있어 UST의 세 교회대학원(신학대학원, 철학대학원, 교회법대학원)은 같은 교학과를 공유하며 다만 대학원 별로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교학과 직원들은 세 교회대학원 업무를 모두 다룹니다. 교회대학원 도서관은 도서관장과 도서관 직원이 감독하며 이들은 UST의 대학 도서관장에게도 보고합니다. 또 한 명의 대학원 서기와 학사협력관을 두고 있습니다. 서기는 동시에 교무과장의 업무도 맡고 있는 반면 서기의 나머지 업무, 특히 소속, 합병, 합체, 그리고 학사 협력과 연계와 관련된

22)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22.2조와 「진리의 기쁨」 제78조 및 적용규범 제62조 1항.

23)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19.3-4조.

24) 「진리의 기쁨」 제31-32조 및 적용규범 제26-28조.

25)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29.4조와 「진리의 기쁨」 제35조 및 적용규범 제29조.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학사협력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 네 명의 교학과 직원이 있어 각각 다른 분야를 담당합니다. 세 교회대학원의 모든 학생들의 활동과 징계, 공동체 발전 및 봉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 한 분과 학생 기록 및 기타 학업 증명을 책임지는 직원 한 분이 계셔서 관리 및 요청 서류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교수들의 수업과 연구 지원 및 강의에 대한 출결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연구 관련 활동, 특히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책임지는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교회법 대학원에 다양한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는 교직원을 둘 것’이라는 「진리의 기쁨」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²⁶⁾

비록 교회대학원들에 별도의 재정담당관이 없긴 하지만 학칙에 따르면 UST의 재정부총장이 세 교회대학원의 재정건전성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²⁷⁾ 학칙에 따르면 ‘교원의 양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학생들의 대학원 학위를 마친 후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학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수들이 학술 세미나와 회의에 참여하는 데 대한 재정적 지원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학칙에서는 UST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장학금을 수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회대학원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세 교회대학원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며 UST와 도미니크 수도회의 지원 속에서 필리핀 교회는 물론 더 널리 아시아 교회에 우리의 사명을 펼치고 마땅한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면 바로 대학 내에 거주하면서 세 교회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교수님들인 바, 강의와 연구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교학과 사무실은 물론, 부서, 세속 대학원과 단과대학 등 강의를 요청 받는 어디에서든 행정업무까지 도맡

26) 「진리의 기쁨」 제36조 1항.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9.3조와 25조.

27) UST 교회대학원 학칙 제26.1조.

아 주십니다.

비상주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보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외에도 UST에서는 교회대학원 내의 강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강의에 필요한 시각자료를 위한 DLP 프로젝터나 텔레비전, 인터넷이 모든 강의실에 공급되어 있고 특히 필리핀의 더운 날씨 속에서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 역시 완비되어 있습니다.

UST의 연구혁신을 위한 부총장실에서는 신학, 종교학, 윤리학 센터(CTRSE)를 통해 교회대학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대학원 연구는 동 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교수들의 연구 결과물 출간은 출판사무실을 통해 *Pilippiniana Sacra*라는 저널에 발표되는데, 동 저널은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저널로 평가하고 있는 출판물입니다.

대학에서는 또한 교회대학원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서관내 장서 수가 증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새로 유입된 장서 수는 148권으로 한 학사연도당 평균 30권이 늘었습니다. 현재 교회법과 관련한 장서 수만 총 335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장서 모음집 외에도 풍부한 저널 자료를 전자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²⁸⁾ 이러한 저널들에서는 학생들의 연구에 관련한 논문의 전체 텍스트가 제공됩니다.

5. 필리핀 천주교 5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법대학원의 사명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하느님의 은총 덕에 지금까지 약 3세기 동안 우리 대학원이 존경받는 기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 대학원을 지키셨던 분들과 지금 열심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발전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어깨에 놓여 있는

28) <http://library.ust.edu.ph/e-databases.html>를 통해서 열람 가능.

바, 현 세대의 필리핀 도미니크 수도회의 노력을 통해 우리 대학원이 계속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청의 가르침, 특히 가톨릭교육성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가까이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봉사가 언제나 교회가 설정한 방향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기쁨」에 언급되어 있는, 교회 학문의 기여에 대한 개혁 및 부흥을 위한 네 가지 기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대한 관상과 전파,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 다(多)학제적 및 교차학제적 접근법 활용, 그리고 교수와 연구를 위한 ‘관계망 구축’이 그것입니다.²⁹⁾ 개혁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필리핀 천주교에 대한 우리 대학원의 기여가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개인으로서의 인간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 역시 구원’하시며 비록 ‘우리가 항상 복음의 아름다움을 마땅히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징표는 바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가장 낮은 자를 위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지는 그리스도교적 진리의 표상과 연구에 반드시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³⁰⁾

우리 교회법대학원에서는 교회법이 사람들의 삶에 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교회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결코 구속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학사연도를 시작하면서 사제(특히 교구 신부와 보좌 신부들)를 교육시켜 다양한 상황에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

29) 「진리의 기쁨」 서문 4.

30) 간추린 사회교리 제52항, 복음의 기쁨 195항, 찬미받으소서 240항(「진리의 기쁨」 제4조에서 인용).

니다. 그리고 *Mitis Iudex Dominus Iesus*³¹⁾에 명시된 대로 그들이 이 과정에서 ‘프론트라이너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공동체 봉사활동 기타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구에서 교회법에 따른 혼전 인터뷰를 돕는 일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학생들은 UST의 Santissimo Rosario 교구에서 공동체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고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어 우리 대학원과 대학교 인접의 다른 교구까지도 확대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법대학원은 특히 연구와 공개 강의에 있어 다른 두 교회대학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학사연도부터 세 교회대학원은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세 교회대학원과 UST CTRSE가 공동 주최하여 “Fides et Ratio”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사연도에는 Conference Mondiale des Institutions Universitaires Catholiques de Philosophie(COMIUCAP)과 협력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Faith, Reason and Dialogue: Listening to Asia”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UST 법학대학원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때 우리 대학원의 학생이었던 법학대학원장은 사제들을 위해 법학 학위(법학 석사)를 수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법상의 혼인법, 계약, 노동기준, 기업의 문제, 성범죄 등 사역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기본적인 법원칙들에 대해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양 대학원의 협력을 통해 일반법률가와 교회법률가가 공히 사제들을 교육함으로써 이들을 일

31) 혼인절차 개정의 견지에서의 교회법 연구에 관한 지침 제22조.

차적으로 도우려는 것이며 또한 교회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일반법률가와 그 학생들 역시 동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 학위는 일반법 학위이므로 UST 법학대학원의 감독하에 놓입니다.

우리 대학원은 또한 혼인법 및 혼인소송법에 관한 Diploma과정³²⁾ 개설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본 과정을 학사연도 2020~2021년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혼인과 가족 상담에 관한 Diploma프로그램³³⁾과 관련, 교회신학대학원 및 교회철학대학원과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된다면 동 프로그램 역시 학사연도 2020~2021년에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법대학원들과의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육성이 교회대학원장들의 모임을 시작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원에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회법 과정 개설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학원이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기대됩니다. 한국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과 우리 교회법대학원의 합병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최초이며 양 기관 간에 이미 시작되어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협력 사례가 매우 감사합니다. 올해 시드니 가톨릭대학원에서도 우리 대학원을 방문해 주셨고 「진리의 기쁨」의 요구사항에 맞게 우리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을 참고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있는 지점에서 어떻게 더 진전해야 할 것인지를 논함에 있어 우리 목표의 가장 선두에서 있는 것은 아마 다

32) 지침 제12조와 13조, 28조.

33) 지침 제23조.

른 교회기관과의 협력과 관계망 구축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 타 기관들의 학생들 및 교수들과의 연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교회법대학원이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필리핀 도미니크 수도회 역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교회법 박사를 더 배출하여 우리 교회법대학원에서 교수, 연구 활동은 물론 다른 기관 및 학자들과의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목표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